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

□ 검토의견

○ 법령적합성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정보공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금번 제출된 동 조례안은 법령상 적합하다고 생각됨.

○ 내용 타당성

동 조례안은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해 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임 병 윤	질문일시	'99. 5. 17
제 목	동지역의 농가, 소상공, 봉급생활자수에 대한 자료요구		
[질문요지] 읍·면·동의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인상에 따른 농가, 소상공, 봉급생활자수는 얼마나 되는가?			
[답변내용] “별 침”			

세무과장 박 철 순



봉급생활자. 소상공. 농가수

읍면동	소상인	세 대 수			봉 급 생활자
		계	비농가수	농가수	
계	4,910	59,398	49,005	10,393	
문산읍	779	9,518	8,354	1,164	
파주읍	458	5,401	4,559	842	
법원읍	448	5,239	4,272	967	
월릉면	218	2,291	1,688	603	
탄현면	165	2,383	852	1,017	
교하면	357	4,982	3,433	1,549	
조리면	475	6,476	5,852	624	
광탄면	409	4,414	3,396	1,018	
파평면	199	1,987	1,208	779	
적성면	295	3,051	2,073	978	
군내면	9	153	29	124	
금촌1동	445	6,293	5,877	416	
금촌2동	653	7,210	6,898	312	